

(16時 0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內務委員會 慶奎福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奎福議員 內務委員會 所屬 新韓國黨 慶奎福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3月 23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면, 現行 條例는 서울特別市 自體監査의 公正性和 專門性を 補完하고, 監査行政에 市民의 參與를 誘導하며, 信賴行政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6年 1月 15日 條例第3256號로 現行 條例를 制定하였고, 條例는 11個 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第7條 第1項에는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監査1擔當官이 된 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을 1996年 1月 15日에 서울特別市の 組織을 대대적으로 改編하여 規則 第2726號로 서울特別市職制規則을 改正하므로 職制改編에 따라 職名이 改正 變更 되었으므로, 現行 條例 中에 변경된 職制의 職名대로 監査1擔當官을 監査擔當官으로 改正 하였으며,

다음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1993年 9月 6日 條例 第3021號로 制定, 1995年 6月 10日 第1次 改正을 거친 條例로서 18個 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現行 條例 第15條에는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事實調査 等を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와 事務職을 둘 수 있도록 規定하고, 그 幹事와 事務職員이 任命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他部署 公務員으로 任命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하면 責任性 確保나 非能率性이 예상되므로 總務處, 國會事務處, 選舉管理委員會 및 釜山廣域市와 같이 幹事는 그 業務의 擔

當部署인 監査室長을 當연직으로 하고, 事務職員은 監査室 所屬職員 中에서 市長이 任命토록 하여 他部處와 行평을 유지하고, 業務處理에 대한 責任性을 確保하기 위해 當연직으로 改正하여 合理的 運營을 도모하고자 1996年 3月 23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監査室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및 심도 있는 質疑와 討論過程을 통하여 두 條例案을 改正하고자 하는 이유가 妥當하다고 判斷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

다. 議員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감사1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 |
|---|--|
|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7.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9.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6時 11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이상 5件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朴南植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南植議員 財務經濟委員會 朴南植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5件의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서울特別市 本廳 各 局長 및 事業所長이 豫算編成部署의 所管別 歲入·歲出豫算 要求時 職種別 定員表, 前年度 定員과의 對比表 등 이외에 기타 豫算의 內容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根據條項을 삼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는 同 改正條例案이 歲入·歲出豫算을 豫算編成部署에 要求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근거조항인 地方財政法施行令 第30條에 의거 改正됨에 따른 條例整備 次元으로</p> | <p>原案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投資機關經營評價委員會 委員長을 副市長에서 行政1副市長으로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同 案件은 1996年 1月 15日 서울特別市 職制改編에 따른 後續措置事項이므로 原案可決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1996年 1月 15日 서울特別市 職制改編에 따라 委員長 名稱變更과 當然職 委員 調整, 그리고 委員會 事務를 處理하는 幹事를 投資管理擔當官에서 豫算總括擔當官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는 市 財政計劃을 審議할 때에는 서울시 政策方向과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市政開發과 政策業務를 總括하는 政策企劃官을 當然職 委員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 委員長을 副市長에서 行政1副市長으로, 委員會 幹事를 投資管理擔當官에서 豫算總括擔當官으로 변경한 것은 1996年 1月 15日 서울시 職制改編에 따른 後續措置事項이므로 原案可決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委員長을 副市長에서 行政1副市長으로, 幹事를 投資管理擔當官에서 豫算2擔當官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96年 1月 15日 市 職制改編에 따른 後續措置事項이기에 原案可決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案件의 主要內容은 蘭芝島 쓰레기埋立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事業所를 設置하고, 事業所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土木事務官으로 補하며, 事業所의 職制, 事務分掌 및 定員은 規則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는 蘭芝島 쓰레기埋立地가 麻浦區 上岩洞에 所在하고 있고, 쓰레기埋立地 및 關聯施設의 維持管理와 埋立地 安定化事業 등</p> |
|---|--|